



< 수시 공시 >

2012.5.14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현재,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

구분	펀드명	발생일 설정잔액(원)	발생일 순자산총액(원)	기준가격
1	신영라이프파트너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A형	1,400,055,815	1,252,370,748	894.51
2	신영라이프파트너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C1형	647,801,694	575,266,887	888.03

2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(1년)

3. 발생 일자 : 2012.5.11(금)

4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